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축산농장 자가진단표 배포 및 지도안내 요청

1. 관련 : 축산정책과-4049('20.9.3.)호, 동-4432('20.9.28)호.

2. 축산업 영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일부 축산농가가 인지를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, 지난 해 우리부에서는 축산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'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'를 마련하고 '축산농장 자가진단표'를 제작·배포(5만부, 축산자조금)한 바 있습니다.

3. 지자체 및 지역농축협에서는 관내농가 및 조합원이 '축산농장 자가진단표'의 훼손, 분실 등으로 자가진단표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작하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지자체, 축산단체 및 농협경제지주(지역농축협 포함)에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 및 조합원 등이 '축산농장 자가진단표'를 통해 스스로 농장을 점검·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·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축산농장 자가진단표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수신자 시도 및 시군구 축산부서, 축산단체, 농협경제지주

주무관	**천행수**	사무관	**문원탁**	축산정책과장	전결 2021. 4. 29. **박정훈**
협조자					

시행 축산정책과-2131 (2021. 4. 29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(어진동) / http://www.mafra.go.kr

전화번호 044-201-2330 팩스번호 044-868-3966 / jsan506@korea.kr / 대국민 공개